

# 국제해사기구(IMO)

## 제8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81)

### 회의 결과 보고서

#### I. 일반사항

1. 회의명 : IMO 제81차 해사안전위원회  
(81st Session of MSC)
2. 기간 및 장소 : 2006. 5. 10~19 (10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3. 참가국 수 및 인원 (우리나라 26명의 대표단 참석)  
98개국 회원국정부대표 715명, 준회원국 정부대표 1명, UN 및 산하기관 대표 2명, 국제기구 9개 기관 16명, 비정부간 기구 37개 기관 대표 171명 등 940명 참석

#### II. 의제별 내용

5. 해상보안강화를 위한 조치
  6. 목표기반(Goal-based) 신조선 건조 기준
  7. 선박설계 및 의장(DE48 및 DE 49중 긴급사항 결과보고)
  8. 기국협약준수(FSI 13차 결과보고)
  9. 산적액체 및 가스(BLG9 결과보고)
  10. 항해안전(NAV51 결과보고)
  11. 복원성, 만재흡수선 및 어선안전(SLF48 결과보고)
  12.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DSC10 결과보고)
  13. 방화(FP50 결과보고)
  14. 훈련 및 당직(STW37 결과보고)
  15. 무선통신 및 수색·구조(COMSAR) 10 중 긴급사항 결과보고)
  16. 해상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술지원 하위 프로그램
  17. 인적요인(Human element)의 역할
  18. 공식 안전성 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
  19.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
  20. 협약의 이행 및 관련사항
1. 의제의 채택, 신입장에 대한 보고
  2. 다른 IMO 회의의 결정사항
  3.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4. 여객선의 안전

- 21. 타기구와의 관계
- 22. 위원회 지침의 적용
- 23. 작업계획
- 24. 기타사항
- 25. 제81차 위원회 보고서의 검토

### Ⅲ. 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 1.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의제 3)

(1) SOLAS 1974 개정(Res. MSC.201(81)):  
2010. 1. 1일 accept 되고 “2010년 7월 1일”  
발효

○ SOLAS Chapter II-2 개정

- Reg.9.4.1.3.3: 여객선의 구명설비, 승정 및 소집장소와 탈출로로 사용되는 외부 계단 및 개방갑판과 접하는 창들과 구명 뗏목 및 탈출활강장치 승강구역 아래에 위치한 창들은 표 9.1에서 요구되는 보존 방열성의 것이어야 하는데, 창문 냉각을 위해 water-mist 노즐의 자동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A-0급 창문을 표 9.1에서 요구되는 보존 방열성에 동등한 것으로 인정함.

- Res.MSC.31(63)으로 채택된 SOLAS Reg.II-2/15규칙 개정 : 고압연료이송관 피복관 장치 보호등에 관한 요건인 Reg. 15.2.9~Reg.15.2.12 규정의 적용을 1992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으로 한정함

○ SOLAS Chapter III 개정

- Reg.7.2.1.1: 24시간 미만을 항해하는 여

객선의 경우 총여객수의 2.5%에 해당하는 유아용 구명동이가 제공되어야 함.

- Reg.7.2.1.2: 24시간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경우 승선한 유아의 수만큼 유아용 구명동이가 제공되어야 함.

- Reg.7.2.1.5: 제공된 성인용 구명동이가 몸무게 140kg 까지 및 가슴둘레 1,750 mm까지의 사람에게 맞도록 설계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수의 적절한 부속품이 제공되어 구명동이가 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SOLAS Chapter IV 개정

- Reg.7.1.6.1, Reg.9.1.3.3, Reg.10.1.4.3 : 2006년 12월 1일 INMARSAT - E 서비스 중단(2006.12.1-MS/Circ. 1171 참조)으로 영향 받는 항목 삭제.

○ SOLAS Chapter V 개정

- Reg.22 : 밸러스트 수 교환 시 일시적으로 항해선교시야 요건의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① 선장이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② IMO에 의해 채택된 밸러스트 수 교환에 대한 권고를 고려하여 선박 밸러스트 수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교환이 시행되고, ③ 밸러스트교환의 시작 및 종료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시적 부적합을 인정함.

(2) SOLAS 1974 개정-장거리 선박식별 및 추적장치(LRIT) 탑재(Res. MSC.202(81)):

- 2007. 7. 1일 accept 되고 “2008년 1월 1일” 발효

○ SOLAS Chapter V/19-1규칙 신설

- 적용시기 :

- 1) 2008. 12. 31일 이후 건조선은 LRIT 장비 탑재 요구됨.
- 2) 2008. 12. 31일 전 건조선박으로서 A1 및 A2 또는 A1, A2, A3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2008. 12. 31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무선설비검사일까지 탑재 요구됨.
- 3) 2008. 12. 31일 전 건조선박으로서 A1, A2, A3, A4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2009. 7. 1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무선설비검사일까지 탑재 요구됨. 단, 이러한 선박이 A1, A2 및 A3 해역을 운항하는 동안은 위 2)항을 만족 요함.

- 적용대상 : 여객선(고속여객선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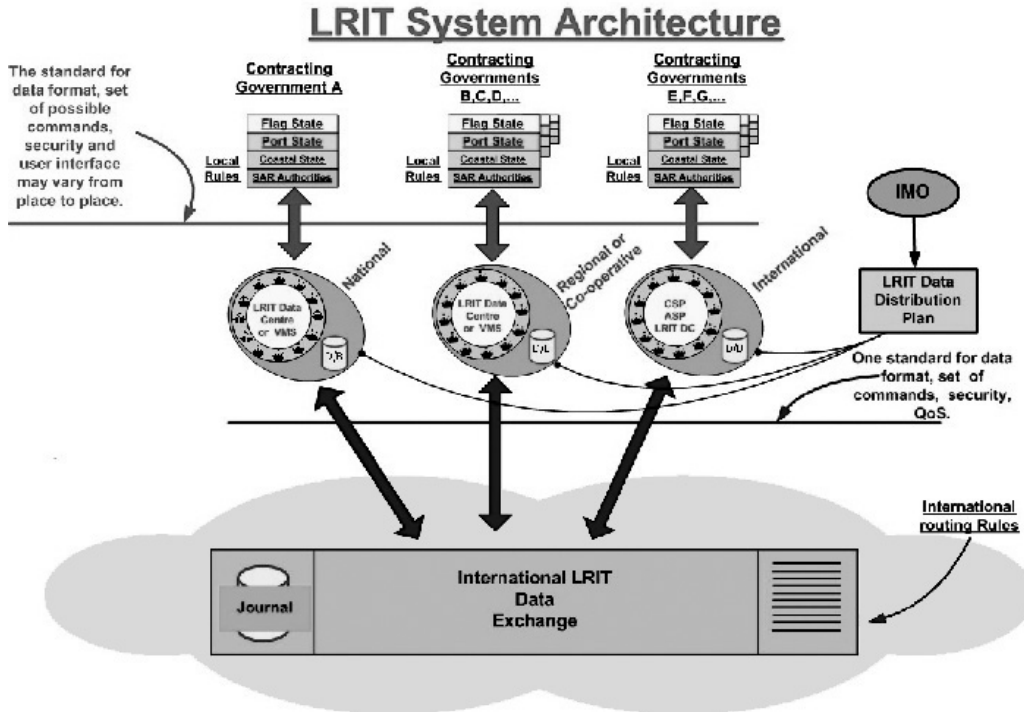
300톤 이상 국제항해 화물선(고속선포함) 및 이동식시추선. 단 A1해역만을 운항하고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탑재한 선박은 적용제외 함.

- 송신정보 : 선박식별(identity), 위치(위도 및 경도), 발송 위치의 날짜 및 시간

- 기능요건: LRIT 성능기준을 만족해야함. 이와 관련하여 금번 IMO는 다음과 같은 LRIT system architecture 등을 포함한 LRIT 성능기준 및 기능요건을 Res. MSC.210(81)로 채택함.

- 기타사항:

\*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에서 LRIT 정보수신 가능하며, 연안국은 자국으로부터 최대 1,000마일까지(단, 기국 영해내 선박 제외) 정보수신 가능함.



\* 예외적인 상황에서 LRIT 정보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주관청은 보안상의 사유로 자국선박의 정보를 수신하면 안되는 연안국을 결정하여 IMO에 통보하고 정보송신을 거부할 수 있음.

\* LRIT 정보에 대한 비용은 해당정보를 요구하는 계약당사국에서 부담하며, 수색구조 목적의 정보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함.

(3) SOLAS 1988 protocol 개정(Res. MSC.204(81)) :

계약국 2/3가 수락한 날자에 accept 된 것으로 간주됨(명시수락). 수락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

- SOLAS Chapter I Reg.10(a)(v) 개정  
Docking survey 기간과 관련하여 SOLAS에서 사용되고 있는 any five year period의 의미를 ESP Guidelines (Res.A.744(18))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 일치하도록 개정함. 즉, any five year period를 기존의 docking survey 완료일 부터 5년이 아닌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또는 화물선안전증서가 유효한 five year period(the five-year period of validity of the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 or the Cargo Ship Safety Certificate)로 개정함.

(4) STCW 1978 협약 개정(Res. MSC. 203(81)):

2007. 7. 1일 accept 되고 “2008년 1월

1일” 발효

\* 경과 조치: 본 규칙의 발효일 전에 승인된 선박보안사관에 대하여는 주관청이 기존의 자격을 2009. 7. 1일까지 (개정규칙 발효 후 18개월) 인정 가능하도록 함.

- STCW 1978 협약 Chapter I 및 VI 개정
  - STCW Convention Chapter I 개정  
ISPS 코드, 선박보안책임자(Ship security officer)에 대한 정의 신설
  - STCW Convention Chapter VI/5 신설
    - \*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증명에 관한 강제적 최저요건 신설

(5) STCW Code, Part A (Res.MSC. 209 (81)):

2007. 7. 1일 accept 되고 “2008년 1월 1일” 발효

\* 참고: 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MSC 80에서 승인된 STCW Code, Part B의 개정사항의 발효일도 위와 동일하게 하기로 함. (금번 개정된 Part B에 대한 추가 개정은 의제 5에서 승인된 STCW. 6/Circ. 11 참조)

- STCW Code Part A, Section A-VI/2-2 개정
  - 고속구조정에 관한 해기능력의 최저기준 상세에 관한 표를 개정함
- STCW Code Part A Chapter VI의 Section A-VI/5 신설
  -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증명 발급에 대한 요건 신설

(6) 강제 코우드 등의 개정 (Res. MSC. 205(81), Res. MSC.206(81), Res. MSC.207(81) 및 Res. MSC. 208(81))

IMO 협약에 연결되어있는 코우드 및 결의서에 대한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함.

○ IMDG Code 개정(Res. MSC.205(81)): 2007. 7. 1일 accept 되고 “2008년 1월 1일” 발효

\* 조기시행: SOLAS 협약당사국은 본 개정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2007. 1. 1일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음.

- IMDG 코드 33-06 개정

- 유엔권고의 개정과 GHS(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를 IMDG Code 제33차 개정안에 대부분 반영함.

- 인화성액체로 구분하는 기준인 인화점 61℃를 유엔권고에서 60℃로 개정됨에 따라 IMDG 코드도 개정

- IMDG Code 7.9.3항의 주관청 연락처 최신화. 연락처 정정사항은 IMO로 송부되어야 함.

○ FSS Code 개정(Res. MSC.206(81)): 2010. 1. 1일 accept 되고 “2010년 7월 1일” 발효

- FSS Code Chapter 5 개정

SOLAS II-2장에서 요구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에 대한 기술상세인 FSS Code 5장을 기 전면 개정함. 단, ICS의 제안에 따라고정식 소화장치의 고장 시 가시카칭경보 발생구역을 중앙화재제어

장소 및 제어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FSS CODE Reg. II-1/51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채택함.

○ LSA Code 개정(Res. MSC.207(81)): 2010. 1. 1일 accept 되고 “2010년 7월 1일” 발효

- LSA Code Chapter I 및 II 개정

- 개인용구명설비의 경우 -15~40℃의 대기온도 범위내에서 작동가능하여야 한다는 내용 추가됨.

- 모든 구명설비는 선명한 붉은 오렌지 (reddish orange)색으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내용 추가됨.

- 자기발연부신표 및 자기점화등용 순간이탈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구명부환의 무게는 4kg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 추가됨.

- 유아용 구명동의 신설 및 구명동의의 형식승인 시험 시 시험체 이외에도 Reference Test Device(RTD) 시험결과와 비교하도록 한 사항 등이 추가됨.

○ 정부대행기관 승인에 관한 지침(Res. A739(18)의 개정(Res. MSC.208(81)): 2010. 1. 1일 accept 되고 “2010년 7월 1일” 발효

- Res. A739(18) 개정

정부대행기관의 승인에 관한 지침서인 결의서 A.739(18)을 개정하여 법정 검사 및 증서발급은 “특정 대행기관의 업무수행만을 위하여 고용된 전담검사원과 심사원(only exclusive surveyors and auditors)”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내용

추가됨. 무선검사의 경우는 Res.A.789 (19) “정부대행업무기관의 검사 및 증서 발급의 기능에 대한 상세”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전담 검사원(non-exclusive surveyors)에게 검사를 위임할 수도 있음.

## 2. 여객선의 안전(의제 4)

- 다음과 같은 SOLAS 협약 및 FSS Code 개정안을 승인함(MSC 82에서 채택예정):
  - II-1장 : 제8-1 규칙(손상상태에서 선박의 항구복귀 능력), 22-1 규칙(침수 감지설비), 55 규칙(대체설계 및 배치) 신설 등
  - II-2장 : 제3 규칙(정의) 개정, 21 규칙(casualty threshold, safe return to port and safe areas), 22 규칙(Design criteria for systems to remain operational after a fire casualty), 23 규칙(Safety center) 신설
  - III장 : 제 4 규칙(구명설비의 평가, 시험 및 승인) 개정, 제 38 규칙(대체설계 및 배치) 신설
  - V장 : 제 34규칙(안전항해 및 위험한 상황의 회피)의 주석 개정(NAV 51에서 개발하여 A25에서 채택예정인 “Guidelines on voyage planning for passenger ships in remote areas”를 주석에 추가로 언급함)
  - FSS Code : 9장(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 경보 시스템) 개정
- 위원회는 위 개정사항들을 승인함에 있어

서 다음 사항들을 결정함:

- SOLAS II-1에 대한 대체설계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 개정된 SOLAS II-1 협약의 확률론적인 방법론에서 이미 수용하고 있음을 주목함. 또한 II-1/8-1 및 22-1규칙 개정안은 SLF49의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 ]로 처리함.
- Safe area의 개념은 화재와 침수사고의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하는 것으로 정의함. 이와 관련하여 SLF 49에서 II-2/22 규칙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들어 MSC 82에 제출토록 지시함.
- II-2 개정안에서 “safe return to port”와 “orderly evacuation and abandonment” 개념은 각각 퇴선의 방지와 퇴선시간의 확보를 다루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규칙으로 처리함.
- II-2/21 규칙은 3개 이상의 주수직구획을 갖는 선박에 적용토록 함.
- II-2/23 규칙(safety center)은 모든 여객선에 적용토록 하였고 NAV에서 safety center의 배치 및 인간공학적 설계에 관한 지침개발(또는 MSC/Circ. 982의 개정)을 지시함.
- III/17-1 규칙(Recovery system) 신설:
  - 파고 3m : 3m로 결정함, 파고가 높거나 낮은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인정하지 않고 전체 3m로 통일함.
  - 적용 선박에 대한 범위 : 모든 선박에 적용기로 함.
- \* 적용 시기 : DE에서 성능기준을 개발

하는데 최소 2년이 소요되고, 업체에서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Recovery system을 개발, 시험, 인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2012.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함.

- 본 회의장에서는 아국은 일본, 그리스, Marshall Islands, ICS 등에서 적용 기간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성능 기준 등을 완성한 후에 적용 날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동 신설규칙을 금번 승인에서 제외시킴. 또한 DE에서 모든 선종에 적용가능한 성능기준을 개발토록 하였으며 STW에서 관련 훈련기준을 개발토록 함.
- 대체설계 및 배치(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
  - 위원회는 II-1장 및 III장 개정안에서 언급되어있는 대체설계 및 배치에 대한 지침서를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사무국에서 이를 MSC 82에 제출하여 MSC circular로 발행되도록 함.
- II-2/21 및 II-2/22 규칙 개정안에 명시된 시스템의 성능기준
  - 안전한 귀항과 질서있는 철수 및 퇴선을 위한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성능기준 초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SLF 49로 하여금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여 MSC 82에 제출하여 MSC circular로 발행되도록 함.
- Voyage planning for passenger ships in remote areas
  - 개정규칙 안 V/34규칙의 주석에서 추가

로 언급되는 “Guidelines on voyage planning for passenger ships in remote areas”를 승인하고 이것이 A24에서 총회결의서로 채택되도록 함.

- IAMSAR Manual 개정안
  - IAMSAR, Volume II, 제 7장의 개정안 (7.8 External support for ships 추가)을 채택하고 이를 MSC.1/Circ.1181로 배부토록 함.
- COMSAR 10에서 작성한 수색 및 구조에 관한 MSC 회람 안
  - 구조계획의 작성, 구조전 도움의 제공, 구조과정 등을 담고있는 Recovery Techniques에 관한 지침을 MSC.1/Circ.1182로 승인 및 배부토록 함.
  - SAR 당국에 의한 선박의 외부지원에 관한 지침서를 MSC.1/Circ.1183으로 승인함.
  - SAR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향상된 비상계획 수립 지침을 MSC.1/Circ.1184로 승인함.
  - 침몰에서의 생존에 관한 지침을 MSC.1/Circ.1185로 승인함. IMO에서 발행한 현재의 지침 책자는 이것으로 대체하여 발행토록 함.
  - 주요 사고에 대응하는 SAR service 요원들의 훈련에 관한 지침서를 MSC.1/Circ.1186으로 승인함.

### 3. 해상보안증진조치(의제 5)

- STW37에서 제기된 STCW 협약 8조에 따른 SSO의 Dispensation과 관련하여, 부

특이한 상황에서 선박보안사관(SSO) 부재 시 다른 선원 중 보안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금번 개정된 STCW Code에 다음과 같이 반영함.

- 주관청에서 차항지 또는 30일 이내까지 선박 직원 중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채택한 STCW Code Part B(Section B/VI-5) 개정에 대한 개정을 STCW.6/Circ.11로 승인함.

○ MSC 80에서 승인된 회사보안책임자에 대한 지침(MSC/Circ.1154)에 이어 항만보안사관에 대한 훈련 및 증서발급에 대한 지침을 MSC.1/Circ.1188로 승인함.

○ SOLAS XI-2 및 ISPS Code를 특수목적선에 적용함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주관청이 결정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목적선 코우드를 개정하자는 제안(MSC 81/5/7)에 대하여, 위원회는 SPS Code가 강제요건이 아니며 기술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Code를 개정하지 않기로 함. 다만 정부소유 비상업용 선박을 제외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 모든 특수목적선(SPS) 및 이들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은 SOLAS 제XI-2장 및 ISPS Code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담은 “특수목적선의 해상보안강화를 위한 임시제도”를 MSC.1/Circ. 1189로 승인함. 이 circular는 그간 ISPS Code 적용을 받아 오지 않던 선박과 항만시설이 즉시 이를 만족시키도록 하기에는 선박이나 항만 운영자에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2008년 7월 1일까지 만족하도록 하는 임

시계획을 승인하고 이 circular의 부속서로 첨부함.

○ Res. MSC.136(76)에 따른 선박보안경보 장치는 보안경보 발령시 IMO 번호없이 선명만 송신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MSC 81/5/11)에 따라 선박보안경보 송신시 선박식별을 위한 정보제공 관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MSC.1/Circ.1190로 승인함:

- SSAS 성능표준과 관계없이 SSA 정보 송신시 선명, IMO식별번호, Call Sign, MMSI, 위치(위도·경도), 시간이 제공되도록 지침서 마련하고, 장비에 따라 선명, IMO식별번호, Call Sign, MMSI가 CSP 및 ASP 등에 의해 부가되어 지정된 수신자에게 전송될 수 있음.

- 2006. 7.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은 장비 설치 전에 관련 test를 실시하고 그 전에 건조된 선박은 2006. 7.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SR 검사시 까지 test를 완료할 것.

○ MSC 79에서 승인하여 회람된 자체평가에 대한 잠정치침인 MSC/Circ.1131의 사용 경험을 여러 국가가 MSC 80 및 MSC 81에 제출하였으며 위원회는 SOLAS 체약국 및 항만시설에 의한 자발적인 자체평가에 관한 지침 관련 바누아투(MSC 81/5/2)와 이란(MSC 81/5/3)에서 제출한 문서 등을 기초로 기존 지침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존의 잠정치침 MSC/Circ.1131을 대체하는 최종 지침을 MSC.1/Circ.1192로 승인함.

○ 선박보안에 대해서도 위 「SOLAS 체약국 및 항만시설에 의한 자발적인 자체평가에



관한 지침」과 유사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MSC 81/5/6, 오스트리아)에 따라 주관청의 선박보안에 대한 자발적인 자체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MSC.1/Circ.1193로 승인함. 이 지침은 주관청의 해상보안코우드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의서와 선박의 보안평가를 위한 질의서로 구성되어있음.

- SOLAS 제XI-2장 및 ISPS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의 보안규정 적용 필요성(일본의 교통장관 회담 결과, MSC 81/INF.10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선박들에 대한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고규정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제안문서의 제출을 회원국에 요청함. 단, 이러한 권고는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해야하며 노출된 보안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데 동의함.
- 위원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불법밀항자의 문제(MSC 81/5/13), 일부 항구에서의 선원의 육상 하선 및 관련자의 승선 어려움(MSC 81/5/8) 및 ICS의 각 항구별 해상보안 시스템 이행실태 조사 보고서(MSC81/5/15)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각 채약국 정부 및 그 항만시설과 선박에서 SOLAS 제XI-2장 및 ISPS Code의 규정에 적합한 효과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Guidance on basic elements of national oversight programmes”를 개발하고 이를MSC.1/Circ.1194로 승인함. 이 지침에는 ISPS Code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점들과 해상보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IMO가 승인 및 채택한 각종 결의서, 지침서, Model course 등의 목록을 담고 있음. 해상선원의 승하선 어려움과 관련하여는 ILO의 “Seafarers’ Identity Convention”의 비준을 각 회원국들에게 다시 요청함.

- 장거리선박식별추적장치(LRIT)
  - 이번 회의 중 핵심 논의사항의 하나인 LRIT와 관련하여, 연안국의 LRIT 정보수신에 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국의 자국선에 대한 정보보호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연안국에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관련 작업반에서는 연안국의 LRIT 추적범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 미국에서는 2,000마일을, 브라질, 중국 및 북한 등에서는 200마일을 연안국의 LRIT 최대수신범위로 주장하였으나, 노르웨이에서 절충안으로 1,200마일을 제시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르웨이 안을 지지하였으며, 작업반 의장은 더 자세하고 절충된 논의를 위해 미국, 중국, 노르웨이 등 7개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작업반에서 논의하여 보고하도록 함.
    - LRIT 관련사항을 비공식 작업반에서 논의 후 해상보안 작업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SOLAS 협약 제V장 제2규칙 및 제19-1규칙(신설)에 대한 개정안을 Res.MSC.202(81)로 채택함.
    - 또한 COMSAR 10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LRIT 성능기준에 대한 결의안 Res.MSC.210(81) 및 LRIT 시스템의 시기적절한 수립을 위한 준비에 대한 결의안 Res.

MSC.211(81)등을 채택하였으며, 특별 기술 T/F(Ad Hoc group on Engineering aspect of LRIT)을 구성하여 MSC 82에 보고하도록 결정함.

- IMSO(국제해사위성기구)에 IMO를 대신하여 LRIT 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MSC 82까지 결정하여 알려주도록 요청함.

#### 4. 목표기반(Goal-based) 신조선 건조 기준(의제 6)

- 의장은 GBS 적용 방법론에 대해 Safety Level Approach(SLA)와 Prescriptive Approach와 관련한 아래의 4가지 Option을 제시하고 의견을 요청함

- 1) Prescriptive 방법론은 중단하고 SLA로 계속
- 2) SLA는 무시하고 Prescriptive Approach만 계속
- 3) SLA 및 Prescriptive Approach 동시 진행
- 4) GBS 적용 방법론에 대한 개발 시까지 현재의 모든 GBS 작업 중지

위원회는 위에 대한 토론끝에 산적화물선 및 탱커선에 대한 GBS 작업은 현재까지 진척된 작업결과(prescriptive)에 기초하여 MSC 83까지 완료하고 SLA에 대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함.

- 목적(Goals: Tier I)  
Tier I은 Tier III(검증기준)가 완료되면 조절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Tier I의

내용을 승인함.

- 기능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Tier II)

- 기능 요건에 재활용(Recycling) 조항을 신설하고 운항 중 검사에 대한 내용을 강화함. Tier II가 Tier III(검증기준)가 완료되면 조절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Tier II의 내용을 승인함.

-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은 Tier II.1의 설계수명은 기능요건의 상위 수준에서 정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선급 규칙, 건조 계약서 등에 명기(상업적 요소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Tier II.1의 설계수명 조항의 승인을 유보함.

- GBS 만족여부의 검증(Verification of compliance: Tier III)

- Scope of Tier IV and III:  
현 시점에서 Tier III는 선급규칙만을 검증대상으로 한다고 결론을 지음. 검증 대상의 선급은 검증 대상의 해당 선급 규칙이 GBS Tier II의 기능요건의 어디에 해당하는 지 등의 검증표를 제출하고 IMO는 이를 통하여 GBS Tier II의 기능요건과 Tier IV의 차이를 식별하여 향후 어떻게 이런 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식별키로 함.

\* 선급 규칙에 대한 검증 절차에 대한 골격에 대하여 합의함

- RO와 RO의 인정(Recognition and Recognized Organization)

GBS를 만족하는 선급 규칙의 검증과 SOLAS II-1/3-1의 목적을 위한 인정 선

급과의 관계를 토론한 결과 일본이 제시한(MSC 81/6/4) RO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IMO GBS를 만족하는 선급 규칙을 가질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 A.739(18)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신조선박의 RO로 인정받는 선급은 GBS를 만족하는 선급 규칙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결론. 그러나 RO가 건조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대행하는 범위가 있으므로 규정 A.739(18)을 개정하지 않기로 함.

\* RO 인정에 IMO GBS 만족여부를 강제 사항 또는 권고 사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하여 선체 구조에 대한 선급 규칙이 GBS를 만족하지 않으면 선박 건조의 RO로서 자격이 없는 것은 분명하나 각국 정부의 RO 인정 여부의 권한은 해당 주관청에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음.

- 검증당국 (Verification Authority)  
GBS의 검증 당국은 MSC 산하 전문가 그룹이어야 함에 동의함.
- 조선소 건조 품질 기준(Shipyard quality construction standards)
  - 아국의 주장에 따라 조선소 건조 품질에 대한 사항은 조선소의 경쟁력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IMO가 직접 감독하지 않고 선급의 규칙 속에서 검증 되는 선급이 보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임.(우리나라 조선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함)
  - 선박의 건조 품질 보증은 궁극적으로 조선소의 책임이나 검증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검증 규정은 선급 규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작업반 다수의 주장이며 이의 적용 범위도 조선소의 다른 품질 분야를 제외한 건조 품질에만 제한할 것임을 결론

- 법적 책임(Liability)  
IMO GBS 전문가 그룹의 결정에 대한 법적인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기능이 IMO 및 IMO 규정(Convention)의 목적과 일치하고 SOLAS와 같은 강제규정에서 다루고 있다면 Liability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결론지음.
- 검증 기준 - 전문가 그룹의 조건(Group of experts criteria)  
전문가 집단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기준에 의해 상호 이해 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주관청의 nomination된 자들로 구성되고 IMO 사무총장은 선급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여 전문가 풀에서 전문가를 임명하여 MSC의 검토를 요청함. IMO의 STCW나 FSA 전문가 그룹처럼 운용.
- 검증 기준 - Tier III 검증 표준(Tier III verification criteria)  
전문가 그룹이 선급 규칙의 검증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선급에 의해 제출된 정보와 문서 검증 과정에 대한 적절한 승인 표준(acceptance criteria) 및 선급 규칙을 검증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포함해야 함. 검증 표준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쉽게 수정이 가능하도록 강제 규정 보다 권

고 지침서로 할 것이고 이의 확정 시 Tier I과 Tier II의 재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 최초 검증(Initial verification)

• 검증 요청은 개개의 선급 또는 똑같은 규칙을 사용하는 선급그룹에 의해 신청될 수 있다는데 합의함.

• 전문가 그룹의 결정에 대하여 선급/선급그룹이 appeal할 수 있음.

- 검증의 유지(Maintenance of verification)

• 검증된 선급 규칙을 가진 선급이 그들의 규칙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전문가 그룹에게 제출하고 전문가 그룹은 개정된 내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재심의 경우에는 선급은 개정된 사항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안전과 관련하여 선급이 아주 급한 상황에 대해 규칙 개정이 요구되어 검증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정된 사항의 관련 자료를 모두 전문가 그룹에게 제출하여 심의절차를 밟아야 함.

○ 선박 건조 파일 : Ship Construction File(SCF)

- 일본이 MSC 81/6/5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Tier II.9(설계 투명성 : Design Transparency)와 관련하여 선박건조파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SCF의 상세를 Tier III verification guidelines에 기술하여 포함 시키기로 하

고 향후 CG에서 더 논의하기로 함.

- 독일은 SCF가 ship specific 요건(Tier IV)이어야 하며 결국은 관련요건이 협약(SOLAS)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피력함.

○ GBS의 IMO 규정화

- Tier I은 SOLAS II-1의 개정사항으로 하고 Tier II와 Tier III의 절차는 SOLAS에서 강제화 시키는 별도의 코우드나 결의서(Resolution)로 한다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함. Tier III의 세부과정과 검증 지침서는 쉽게 수정 가능하도록 IMO에 의해 개발될 지침서에 주석으로 명기하도록 함.

○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에 대한 GBS의 완성(Finalization for Bulk Carriers and oil tankers)

- 신조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에 대한 GBS의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IACS CSR을 가지고 선도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진행하기로 함.

## 5. 선박 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 결과 보고(의제 7)

○ 협약 당사국은 구명설비에 대한 시험에 있어 관련 시험절차 및 범위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도록 시험기관에 통보하는 DE 48의 주관청에 대한 권고를 승인함.

○ SOLAS III/35(훈련 매뉴얼 및 선상 훈련 보조기구)에 적합한 구명설비훈련매뉴얼의 본선비치 권고(DE48의 주관청에 대한 권고)를 승인함.

〈보호도장 관련〉

- 보호도장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안 및 보호도장 성능기준의 발효일:
- 이전까지 모든 SOLAS 개정안이 건조일 (Construction date) 기준이었으며 이에 대한 지지 의견이 강했으나, 계약일(Contract date) 기준으로 하자는 조선국가 의견이 확정됨. 다만 발효일
  - 계약일 기준한 규정 발효 시의 장점:
    - \* 시행일: 2008년 7월 1일 → 2010년 초 延期 (1년 반 발효일 연장)
    - \* 선박 계약 시 선가 및 건조 일정 관리 일 관성 확보
- SOLAS 개정안(II-1/3-2 규칙, XII/6.3 규칙, SOLAS 안전구조증서 양식) 및 보호도장

성능기준을 승인함.(MSC 82차 채택예정)

- SOLAS XII2장 6규칙이 2006년 7. 1일 발효함에 따라 길이 150미터 이상 산적화물선은 주관청이 결정하여 2006. 7. 1일 이후부터 도장성능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람을 MSC.1/Circ.1198로 승인함.
- 마샬군도는 발라스트 협약 발효에 따른 보호도장성능기준을 재검토해야 함을 언급함.(Active substance가 도장에 미치는 영향 고려)
- 항구접근설비(PMA)중 구조강도 부재가 아닌 부분에 대한 보호도장성능기준 적용 기준에 대하여는 DE에서 논의토록 함. 구조강도 부재인 경우 자동으로 현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함.

번호	항 목	최종합의 결과
1	발효일	- 계약일 기준 2008년 7월 1일 이후 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 - 계약이 없을 경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K/L 되는 선박
2	적용 대상선	-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 - 150m 이상의 산적화물선의 이중 선측 공간
3	건도막 두께	- Epoxy 320 $\mu$ m (90/10)
4	분진량	- ISO의 분진량 기준에 의한 분진크기 3 이상은 분진량 1로 관리(테이핑 관찰법 적용) - 분진크기 2이하는 철판 표면에서 확대경을 사용하지 않고 보이면 제거(테이핑 미적용)
5	염분도	- 50 mg/m <sup>2</sup> NaCl
6	DFT 측정 기준	- 기존 Annex 3를 적용시 VLCC의 경우 측정만 5개월이 소요 - 기존 Annex 3 대비 약 40% 수준으로 합의
7	Stripe Coat	- Two stripe coating for edge part 단, 용접선은 1회 적용 가능하나, 자동 용접선도 포함.
8	모서리 가공	- 2R, 3-pass 또는 동등 기준
9	표면 처리	- Shop primer 손상 부위는 Sa 2.5 기준으로 합의 - 비손상 Shop primer는 본 도장과 상용성(compatibility)을 입증할 경우는 제거하지 않음. - 본 도장과 상용성이 없을 경우는 비손상 Shop primer를 70% 이상 제거
10	표면 조도 타재 후 표면	- 30~75 $\mu$ m - Butt : St 3 or better
11	처리	- 25m <sup>2</sup> 를 넘는 연속된 damage 또는 2% 이하는 St 3, 이상은 Sa 2.5
12	연마 포함물	- 도막 층간에 있는 연마 포함물은 제거

- 도장 부위의 Repair 및 Maintenance: SOLAS 개정안에 repair 및 maintenance 강제화 요건을 포함시켰으며 세부 지침은 국제선급협회(IACS) 보수도장 규정(2005년 제정)에 근거하여 DE에서 개발하기로 함.

## 6.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의제 8)

- FSI가 사무국에게 요청한 IMO 협약 목록의 최신화를 정례화 및 이를 IMO web.에서 가능하도록 조치 등에 대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사무국에 제공해 줄 것을 지시함.
- 간행물의 본선 비치 요건에 대한 MSC-MEPC/Circ.2를 승인함.
- SOLAS 제XII장을 만족하지 못하여 PSC 문제가 될 수 있는 선박을 위한 임시지침으로서 MSC.1/Circ.1199를 승인함.
- 현행 해양사고분석절차를 개정하여 구명설비사고를 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동 분석절차를 안전문제의 평가와 현행 규정의 수정을 식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FSI 13의 요청에 대해 사고분석절차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함을 주지함.
  - 사고 원인의 반복 또는 사고의 인자 등 잠재하는 안전쟁점 존재여부 결정
  - 정보수집, 위험인식, 산정된 위험수준의 비율, 안전권고 초안보고의 준비 등을 통한 안전쟁점의 평가
- 항만국통제 양해각서/협정에 관한 제3회 워크숍 및 제2회 항만국통제에 관한 파리 및 도쿄 MOU 합동장관회의 보고서, PSC

연차 보고서, 세계선대 자료 등과 관련한 FSI의 견해, 권고 등에 대해 동의함.

- PSC검사관을 위한 지침서 개발(안)에 대한 FSI 결정에 동의함.

## 7. 산적 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의제 9)

- MEPC 53에서 승인되었던 선상에서 직업적인 건강과 안전계획의 기본원칙에 대한 지침을 MSC-MEPC.2/Circ.3로 승인함.
- MSC 82차 승인을 위해 준비된 산적상태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의 IGC Code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MSC Circular 초안에 주목함.
- IGC 및 GC Code 개정안의 MSC 82에서의 채택을 위해 승인함.
- BCH Code 개정안을 Res.MSC.212(81)로 승인함. 이는 MEPC 54에서 채택되었음.
- IBC Code 개정안을 승인함. 이는 MEPC 56 및 MSC 82에서 채택 예정임.
- 개정된 IBC Code의 방화요건에 대한 개정안의 조기 적용을 위한 MSC-MEPC.2/Circ.4를 승인함.
- 2006. 9월에 개최 예정인 ESPH 작업반회의 개정(안)이 개정 IBC Code의 발효일 전에 MSC 및 MEPC의 결정을 위한 시간관계상 ESPH가 MEPC 55 및 MSC 82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승인함.
- 또한 BLG 9차에서 개정 IBC 코드 제17, 18 및 19장의 개정안이 MSC 81 및 MEPC 55차에 상정되었으나, 상기 ESPH 작업반의

회의(2005. 10. 24~28)에서 협의된 동 17, 18 및 19장에 대한 추가 개정 사항(물질 추가)이 있어 동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개정된 IBC Code의 발효일(2009. 1. 1)에 함께 발효될 수 있도록 긴급으로 또한 승인함.

## 8. 항해안전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의제 10)

- Res.A.858(20)에 따라 다음의 통항분리에 대한 CORLEG.2/Circ.57을 채택함.
  - “In the Strait of Juan de Fuca 및 접근수로”의 기존 통항분리제도에 대한 개정
  - “Off Cabo de Gata”의 기존 통항분리제도에 대한 개정
  - “Off Porkkala Lighthouse”의 기존 통항분리제도에 대한 개정
  - “Dover Strait 및 주변 해역”의 기존 통항분리제도에 대한 개정
- Res.A.858(20)에 따라 상기 통항분리 이외에 아래의 구역에 대한 SN.1/Circ.253 및 254를 채택함.
  - “Dover Strait의 CS4 buoy” 주변의 관련 통항금지구역(Area to be Avoided)에 대한 개정
  - “Canary Islands”의 새로운 통항분리제도
- 신규 및 현존 통항분리제도와 수반되는 항로 계측과 관련한 결의안, 그리고 통항분리제도 이외의 항로 계측과 관련한 결의안 등을 채택 결정함.
- Great Belt Traffic Area의 기존 강제선박보고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NAV51에서 승인(SN.1/Circ.251)되었고, 24차 총회에

서 Res.A.978(24)로 채택되어 금번 2006. 7. 1 0000시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됨.

- Canary Islands PSSA의 관련보호조치로서 새로운 강제선박보고시스템 관련 결의안 Res.MSC.214(81)을 채택함.
- Galapagos 군도 PSSA의 관련보호조치로서 통항금지구역을 지정한 총회결의서 초안이 NAV51에서 승인(SN.1/Circ.250)되었고, 24차 총회에서 Res.A.978(24)로 채택되어 금번 2006. 7. 1 0000시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됨.
- Baltic Sea Area의 PSSA의 관련보호조치를 제안한 총회결의서 초안이 NAV51에서 승인(SN.1/Circ.250 및 CORLEG.2/Circ.56)되었고, 24차 총회에서 Res.A.977(24)로 채택되어 금번 2006. 7. 1 0000시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됨.
- ECDIS backup으로서 “최신종이해도의 적절한 포트폴리오(appropriate portfolio of up-to-date paper charts)”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하여 SOLAS Reg.V/19의 2.1.5항 주석을 수정하여 이를 승인함.
- 고속선에 대한 ECDIS 탑재 강제화를 반영한 2000 HSC 코드 개정에 대한 MSC resolution 초안을 승인함.
- 회원국들이 자국 수역(territorial seas) 중 ENC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대해 “최신화된 종이해도의 적절한 폴리오(appropriate folio of up-to-date paper charts)” 요건을 만족하는 종이해도를 식별하여, 이를 온라인 카탈로그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IHO에 통보하도록 주지함.

- 갈릴레오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바로 갈릴레오의 World-Wide Radio - Navigational System(WWRNS)로서의 인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경우 운영자들은 인정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함.
- VDR 및 S-VDR 저장 데이터 추출 방식에 대한 SN/Circ.246를 승인함.
- VDR(Res.A.861(20)) 및 S-VDR(Res. MSC.163(78)) 성능기준 개정에 대하여 Res. MSC.214(81)을 승인함.

### 9. 복원성, 만재할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 위원회 결과보고(의제11)

- SOLAS Chap. II-1에 대한 설명으로서 주 해석의 개발을 위한 진행절차가 SLF 49에서 MSC.Circ.로 준비되어 MSC 82차에서 승인예정임에 주목함.
- 비손상 복원성 Code 개정 개발 절차에 대하여 주목하고, 다만, 업계에 긴급한 사항이므로 Code 개정 전에 기후 한계조건에 대한 대체 평가를 위한 내부 잠정지침에 대한 MSC.1/Circ.1200을 승인함.
- IMO 제 협약에 있어 손상복원성요건의 조화에 대한 작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SLF의 결정에 주목함.
  - 개정된 SOLAS II-1은 건화물선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MARPOL, IBC Code 및 IGC Code도 SOLAS에 내에 통합할 필요성이 없음.
  - HSC Code, OSV Guidelines, MODU

Code의 손상복원성기준은 SOLAS에 내에 통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INF 및 SPS Code도 동 Code 내에서 구획 및 손상복원성기준을 개발하여야 함.
- 1988LL Protocol의 손상복원성은 감소된 건현이 지정되는 Typev “B”의 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만 추가 검토가 필요함.
- MSC 82차 채택으로 1988 LL 의정서 부속서 B에 대한 개정안 승인함.
- MSC/Circ. 650 개정과 관련하여, DE에게 CAS에 의해 단일선체를 이중선체로 개조하는 경우 SOLAS II-1/3-6(화물창 및 기타 구획으로의 접근수단)의 적용문제로 간주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에 주목함.

### 10.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 위원회 결과보고(의제 12)

- IMDG Code의 인화점 61°C가 유엔권고에 의한 60°C로 개정됨에 따라 SOLAS II-2/19(구규칙 II-2/54)을 포함한 SOLAS 관련 규칙 및 IMDG Code 관련 사항이 개정되어야 함을 FP에 주지함.
- 주관청 연락처에 대한 MSC.1/Circ.1201 승인함.
- 위원회는 DSC 10에서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육상 종사자의 훈련(IMDG Code Chap. 1.3 Training)을 강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상안전에 중요하다고 결정되었음에 주목함. 그러나 동 육상종사자의 훈련은 기구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 DSC 10에서 몇몇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음.



- “선박에서의 살충제 안전사용에 대한 권고”는 2007년 완료예정인 DSC 11의 긴급 신규의제로 채택됨.
- Direct Reduced Iron Fines 운송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DSC/Circ.36 발행에 대한 승인.
- 동 화물은 운송 중 화학적 위험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BC Code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안전한 취급 및 운송에 대하여는 DSC 11에서 처리하기로 함.
- 위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장지에 대한 점검 프로그램과 관련한 MSC/CIRC. 859의 개정안은 MSC.1/Circ.1202로 승인되었으며, 회원국 정부 및 단체에서 이후 심각한 구조적 결함의 보고절차에 반영하여 DSC 11에 제출하도록 함.
- BLU Code, 터미널 종사자를 위한 고체산적화물의 적양하 매뉴얼 및 SOLAS Chap. VI의 개정은 BLU Code에 그레인을 포함하는 작업범위 확장의 결과라는 DSC의 견해를 승인함.
- E&T(Editorial and Technical) Group의 2007년도 2차례 회의 개최(5월, 9월)에 대해 승인함.
- DSC의 권고 및 MEPC 54에서 결정된 살충제 살포에 대한 MSC-MEPC.2/Circ.5를 승인함.
- 위험물운송 선박의 비상대응절차 MSC/Circ.1025는 이후 개정된 IMDG Code 개정안 32-04 및 금번 제출된 33-06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DSC의 요청에 의해 MSC.1/Circ.1025/Add.1이 승인됨.

- 간소화위원회(FAL) 32차의 결과인 MSC 81/2/2의 IMDG Class 7 방사능물질 중의료 및 건강분야에 사용되는 경우를 위한 새로운 UN No. 부여에 대한 프랑스의 제안에 대하여 FAL 33 및 DSC 11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하였고, 동 전문위원회들의 결정을 IAEA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음.

## 11. 방화전문위원회 결과 보고(의제 13)

- FSS Code Chap. 4 개정에 대하여 승인함.
- SOLAS Chap. II-2와 FPT Code의 화재 시험절차에 대한 통일 해석인 MSC.1/Circ.1203 승인함.
- SOLAS Reg. II-2/4 및 Chap. II-2/9의 지속적인 적용을 위한 SOLAS Chap. II-2 개정을 고려하여 “선루 및 갑판실의 주위벽 외부의 보호”를 신규의제로 채택함.
- MSC 82 채택을 위한 SOLAS Reg. II-2/4.5.2.3 개정안 및 SOLAS Chap. II-2 개정요건의 조기적용을 위한 MSC.1/Circ. 1204 승인함.
- 구명정 시스템에 대한 작동과 보수유지 매뉴얼 개발을 위한 지침”에 대한 MSC.1/Circ.1205 승인함.
- 구명정과 관련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MSC.1/Circ.1206 승인함.
- 상기 MSC Circ.1206을 SOLAS 및 ISM Code로 강제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FSI 및 STW에 조회를 승인함.
- SOALS Reg. III/19.3.3.4의 조기시행에 대한 MSC.1/Circ.1207 승인함.

- SOLAS Chap. III 개정안을 82차 채택을 위해 승인함.
- LSA Code 개정안을 82차 채택을 위해 승인함.
- 구명설비 시험에 대한 개정 권고의 개정안을 82차 채택을 위해 승인함.

## 12.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결과보고 (의제 14)

- 다음 회기(STW 38)에서 ISM 규정 하에서 항내 접안선박(여객선)의 퇴선을 위한 지침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Human Element에 관한 Joint MSC/MEPC Working Group에 지시함.
- 자유낙하식 구명정이 탑재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한 친숙화 및 훈련 지침에 관한 STCW Code B편 개정에 대한 STCW.6/Circ.10을 승인함.
- 승선 중인 GMDSS operator의 친숙도에 관한 촉진 및 지속적인 검증에 관한 MSC.1/Circ.1208을 승인함.
- GMDSS 장비 및 운영 절차의 표준화에 관한 안전을 다루도록 WRC(World Radio Conference) 2007에 보내는 IMO 문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COMSAR 10에 제안한 STW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함.
- STCW 코드 3장에 대하여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STW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함.
- 비손상복원성 코드 개정안 제5장과 관련된 전문위원회의 의견 및 코멘트를 사무국이 SLF 49에 전달하도록 승인함.

- 세계 선원 교육기관에 있는 시뮬레이터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자 하는 MSC.1/Circ.1209를 승인함.
- 각 회원국의 STCW 협약 평가보고와 관련된 정보의 공포에 대한 MSC/Circ. 1164/Rev.1을 승인함.
- STCW 코드 A-I/7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해 유지되는 전문가와 관련된 MSC./Circ.797/Rev.13을 승인함.

## 13. 무선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의제 15)

- COMSAR10차 회의에서 나온 다음의 긴급 사항에 대한 결과 심의.
  - IMO의 GMDSS 통신 설비를 쓰나미 경보에 법제화 하는 것과 관련하여 IOC/UNESCO에 서신을 전달하도록 하는 전문위원회 작업을 승인함.
  - 해상 서비스 관련 문제를 고려한 WRC-07 의제에 대한 IMO의 입장을 승인하고 사무국이 ITU가 이를 고려하도록 ITU의 적절한 기구에 전달하도록 승인함.
  - 향후의 해상 무선통신을 위한 요건 개발을 위해 동의한 위임사항을 다룰 해상 무선통신 IMO/ITU 전문가 그룹의 재결성 승인. COMSAR 11이 2007. 2월에 개최되므로 동 그룹이 2006. 7. 5-7일간 IMO본부에서 회합하여 그 결과를 MSC 82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
  - COSPAS-SARSAT의 국제 406MHz 비콘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MSC 회람

문서 승인함.(MSC.1/Circ.1210)

- Res.A.888(21) 관련

\* 미국을 비롯한 남아공, 러시아, 독일 및 터키 등은 신규 위성사업자를 각 정부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고, 한편 미국에서는 신규 위성사업자와 관련된 SOLAS의 개정(안)은 이후 COMSAR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의안으로 채택됨.

\* IMSO에서는 IMSO 협약과 IMO 협약 간의 책임 및 사설 회사들의 계약적 협의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IMSO의 입장으로 재 거론함.

\* 결국 사이프러스의 주장에 의해 기술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사안이며 법적인 책임과 면제의 문제가 대두되므로 2007. 11월 제25총회까지는 결의안을 개정하지 않고, MSC 82차에서 Legal의 조안과 기타 제안들을 근거로 결의안 A.888(21)을 개정하기로 함.

- 항공과 해상 수색구조 당국 모두에 의해 LRIT와 AIS 데이터를 접속하는 것이 수색구조 활동에 상당한 이익이며 LRIT 표준을 개발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원하는 전문위원회 의견을 승인함.(의제 5 참조)

- LRIT에 대한 전문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고려하고 LRIT 시스템을 위한 성능 표준과 기능 요건을 승인함.(의제 5 참조)

- 항공과 해상 수색 구조 협조체계를 위한 ICAO/IMO 공동작업그룹의 13차 회

의 소집에 대한 승인함.

- IMASAR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MSC 회람을 승인함.(MSC.1/Circ.1181)

#### 14.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 (의제 19)

○ 소말리아 연안으로부터 180 마일 이내 수역에서 해적 및 무장 강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총장의 제안에 의해 제23차 총회 특별 회기에서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에 관한 초안을 검토하였고 이사회에서 결의서 초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제24차 총회에서 소말리아 연안 수역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에 관한 Res.A.979(24)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 아국이 발원한 “동원 628”호 피납현황 및 기술협력 의사표현과 관련하여 케냐, 중국, 인도네시아 및 라이베리아 등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지발언을 하였음.

- 이에 대해 제반 비용을 아국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아프리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미나 또는 워킹 개최가 결정되었고, IMO 사무총장은 동 지역에서 공격을 받는 선박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국에 촉구함.

- 또한 사무총장은 케냐 몸바사의 해난구조 협의 후 탄자니아와 세이셸레스에 수색 및 구난(SAR)을 위한 2개의 센터를 설치중이며 이후 해적감시도 병행할 것임을 알림.